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2년도 제25차 회의

1. 일 시 2012년 12월 27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박 원 식 위 원 (의장직무대행)

임 승 태 위 원

하성근 위원

정해방 위원

정 순 원 위 원

문 우 식 위 원

4. 결석위원 김 중 수 의 장 (총재)

김 준 일 부총재보 강 준 오 부총재보

강 태 수 부총재보 김 종 화 부총재보

추 흥 식 외자운용원장 최 운 규 경제연구원장

신 운 조사국장 성 병 희 거시건전성분석국장

김 민 호 통화정책국장 유 상 대 국제국장

이 중 식 금융결제국장 김 윤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명 종 공보실장 서 영 경 금융시장부장

성 상 경 의사관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52호 - 201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6조에 의거 201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수립·공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본 안건에 대해 1차적으로 주관위원의 의견을 반영·수정한 보고서를 12월 18일 위원협의회에 보고하였으며, 동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하였다고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통화신용정책 운용여건 부분에 재정부문을 포함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른 위원들은 새 정부 출범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재정상황이 정부 예산안과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금리중심 통화정책 운용체계의 유효성을 점검하면서 미시적 대응방안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새 정부 출범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통화신용정책 운용여건에 재정부문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통화정책 과 함께 양대 거시정책 수단인 재정정책의 방향 및 정도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 함으로써 당행 통화정책과 시너지(synergy)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3) 심의결과

수정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제6조에 의거 201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붙임과 같이 수립·공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201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생략)

<의안 제53호 - 2013년 1/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

(1) 의장직무대행이「한국은행법」제28조 및「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제9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53호 — 「2013년 1/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을 상정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최근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3년 중에도 중소기업대출이 금년과 비슷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자금사정 지표가다소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가운데, 2013년에도 업황이 부진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태도도 대내외의 경기부진에 따른 향후 업황의 불확실성 증대로 다소 신중한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2013년 1/4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는 전분기와 같이 9조원 수준으로 유지하되,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부문 정비 및 운용방식 개선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한도증액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에 대해 다른 위원들도 모두 동의하였음.

(3)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의결사항

2013년 1/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9조원으로 정한다.

<의안 제55호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28조 및 제81조에 의거 지급결제시스템의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당행이 운용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신국제기준과 기존 3대 기준과의 차이에 대해 무엇인지 물 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신국제기준은 주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제정되었기 때문에 거래정보 저장소 등 새로운 지급결제인프라에 대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일반사업 리스크등의 관리 요건도 신설되거나 기존 3대 기준에 비해 대폭 강화되었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신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금융시장 인프라 (FMI)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신기준은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미이행시 FMI의 평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정책당국으로서도 신기준이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의 산물인 가운데 개별 회원국의 이행정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점검이 예정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여러 위원들은 신국제기준의 국내 이행에는 많은 협의과정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 미비사항, 금융기관 부담비용 등을 잘 고려하면서 로드맵(road map)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당행은 내년중 구체적인 FMI 평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관련 당국과의 협조 등을 통해 평가 실효성이 담보되면서도 지급결제 운영기관 및 참가 금융기관의 부담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국내 이행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이 과정에서 주요국의 신국제기준 도입 및 이행상황도 면밀히주시하면서 IMF 등 국제기구의 평가에 대비하겠다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안)」(생략)